# 특고(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고용/산재보험 제도

2022.07

고용보험: 2022. 07. 01부 시행

산재보험: 2021. 07. 01부 시행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자신이 직접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 소프트웨어기술자 (고용/산재 모두 의무가입대상)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 15개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사람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신고된 사람
- 2 (학력)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전공자
- 3 (경력)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 근무 경력





(22.07.01 적용확대)







# 1.1 보험료 산정방법

- (보수액)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제19조) 또는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제12조 제2호 또는 제5호)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

- ♣ **필요경비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경비율을 적용** 
  - -> IT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우 : 보수액에 경비율 15.7% 공제 후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 22.7월부터 1.6%(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½씩 0.8% 부담)

예시) 월 보수단가가 600만원인 경우

경비 = 6,000,000 x 15.7% = 942,000

월 보수액 = 6,000,000 - 942,000 = 5,058,000

산정 보험료 = 5,058,000 x 1.6% = 80,920원 (사업주와 각각 1/2씩 40,460 씩 부담)

단, 월 보수액이 133만원 미만인 경우, 하한기준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 산정

# 1.2 적용 제외

## (연령기준)

- ✓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적용 제외
  - 시행일('22.7.1.) 기준 65세 이상자는 제외 ('57.7.1. 이전 출생자는 제외)
- ✓ 65세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

#### 사례

(사례1) **생년월일이 1957.7.1. 이전**인 관광통역안내사가 여행사와 2022.6.1.부터 **1개월 이상 계약**하여 노무제공하는 경우

→ 65세 이상자로 적용 제외

(사례2) **생년월일이 1957.7.15.**인 관광통역안내사가 **2022.7.1.부터** 여행사와 **1개월 이상 계약**하여 노무제공하는 경우

→ 2022.7.1. 현재 64세이므로 당연 적용

(사례3) 생년월일이 1957.7.15.인 노무제공자가 2022.7.1.부터 여행사와 1년간 계약하여 노무제공하고, 시간의 단절 없이 2023.7.1.부터 다시 동일한 사업주와 1개월 이상 새로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65세 이상이더라도 계속하여 당연 적용

## (소득기준)

- ✓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 (월) 매월 초일~말일, 월중 계약체결일~말일
  - (보수액)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 (경비)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 경비율을 고시
- ✓ 일반노무제공자(1개월 이상 계약)는 소득 기준 적용 단기노무제공자(1개월 미만 계약)는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 소득합산신청

...........

노무제공자(월보수액 80만원 미만)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합산한 소득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소득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인 기간은 당연 적용됨

- 다만, 노무제공자 본인이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함

그외 외국인 노무제공자 / 공무원 사학연금적용자의 경우는 적용 제외 함.

# 1.3 이중 취득

서로 다른 사업주와 각각 계약 근 로 자 ↔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이중 취득 허용

동일한 사업주와 계약 근 로 자 ↔ 노무제공자 이중 취득 불가 (근로자 자격취득)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 일반 노무제공자 ↔ 자영업자 이중 취득 허용 (원하는 경우)

## 1.4 실업급여

##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1) 실업 상태일 것(피보험자격상실):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2) (기여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식)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작성

(사례1) 일반 노무제공자로 '23.3.11.취득, '23.12.20. 이직한 경우 → 4월 ~ 11월(8개월) + [(21+20)/30](1.37개월) = 9.37개월

(사례2) 단기 노무제공자는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산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ᆔᅯᆌᆌ	1월	1월	1월	(10+10+8)/22= 1.3개월		
피보험기간	3개월			1.3개월		

##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는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 1.4 실업급여(계속)

- 실업급여 지급 수준
- (1) (기초일액)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2)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 하한액(133만원 X 60%)은 798,000원, 1일 26,600원
- (3) 소정급여일수
  - 피 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피보험기간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1) (기초일액)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2)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 하한액(133만원 X 60%)은 798,000원, 1일 26,600원

## (3) 소정급여일수

- 피 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피보험기간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4) 다수 고용형태 종사자의 피보험단위기간
  -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 구직급여시-근로자 피보험기간, 예술인으로 구직급여시-예술인 피보험기간,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시-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 \*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중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경우

[ 노무 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 12개월 ]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 / 180일 ] +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 9개월]

# 1.5 출산전후급여



## (1) 지급 요건

-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2) 지급 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80만원)

## (3) 지급 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다태아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21.07.01부 적용)



# 1.1 보험료 산정방법

-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 ♣ 월 보험료= 월 기준보수액 3,937,500원 × 산재보험료율(사업장의 보험료율)
  - -> IT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우 : 보수액에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½씩 부담)

구분	소프트웨기술자	
기준보수(월)	3,937,500원	
주된 업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 사업	
요율('21년~)	7/1,000 (사업장 적용받는 요율 적용으로 사업장별 다를 수 있음)	
보험료(월)	료(월) 27,560원	
사업주*종사자 부담분	13,780원 // 별도고시전 까지 해당	

<sup>※</sup> 일반근로자가 있는 경우 SW기술자와 일반근로자의 월 보험료 분리 부과하여 고지

# 감사합니다

고용/산재 문의처 : 근로복지 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서울 특고센터: 02-6946-0500